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603호
----------	--------

제출년월일 2025. 4.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회관 목적 및 명칭·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보훈회관 용도 및 기능을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 다.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안 제5조)
- 라. 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불임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2. 19. ~ 3. 11.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 나) 경기도 : 복지정책과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김포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은 김포시 풍무로 146번길 82에 둔다.

제3조(용도) 보훈회관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6조(시설의 운영)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 보훈회관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보훈회관 시설물 종합관리
2. 보훈회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3. 보훈회관 시설 운영 관련 행정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무

제8조(보훈회관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 지도·감독 등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복지정책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복지정책과장 강 영 화
	팀 장 직위·성명	보훈팀장 박 성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 철 훈(☎2617)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보훈회관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제2조(회관의 성격) ①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이다.<개정 85. 9. 13, 89. 5. 24>

② 회관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공여하며 회관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이용할 수 없다.<개정 85. 9. 13, 89. 5. 24>

제3조(관리협의회구성) ① 회관의 관리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관 단위로 보훈회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85. 9. 1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중앙보훈회관(이하 “중앙회관“이라 한다.)협의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본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80. 4. 1, 85. 9. 13, 89. 5. 24, 90. 2. 10 처훈령 558, 97. 1. 16>

④ 지방회관협의회는 당해 회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지부 또는 지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관할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또는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

⑤ 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회장의 권한) ①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단, 중앙회관협의회장은 각급 지방협의회장을 지휘·감독하고 광역시·도협의회장은 시·군·구협의회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80. 4. 1, 85. 9. 13, 97. 1. 16>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89. 5. 24>

1. 회관운영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
2. 단체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3. 수익사업의 운영
4. 회관의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대여
5. 수익금 처리
6. 기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앙회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지방회관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6. 5. 9, 89. 5. 24>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80. 4.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9. 5. 24>

③ 삭제<개정 14. 10. 21>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85. 9. 13>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8조(복지사업) ① 회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직영수익사업의 수지명세 및 시설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명세를 협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80. 4. 1, 85. 9. 13>

② 회장은 금전출납부 및 지출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를 간사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여 위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범위) 제8조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6>

1. 회관 및 기타 회관에 부속된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 복리에 공여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확장에 필요한 경비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의 운영보조금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0조(보고 및 감독) ① 회장은 매년도말에 회관의 관리현황을 보고하되, 중앙회관의 관리현황은 장관에게, 지방회관의 관리현황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관할보훈지청의 현황을 수합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

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수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주의의무) 회관관리에 있어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한다.